

인천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9가단269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박정혁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철규

변론 종결2020. 7. 22.

판결 선고2020. 8. 19.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이하 포괄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각 7,4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참깨 등 농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수입업자이고, 피고는 C관세법인의 이사로 재직 중인 관세사이다.

나. 원고들은 2009년 하반기부터 2011년 하반기까지 농수산물유통공사(이후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로 명칭 변경)가 실시하는 참깨 수입권 구매에 가장업체를 내세워 수입권을 낙찰받아 관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2012년 초경 부산세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다. 원고들과 함께 조사를 받은 유찬하는 전직 세관공무원으로 관세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 원고들은 유찬하의 제안으로 피고에게 관세 자문을 의뢰하였다.

라. 이후 부산세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원고들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등 사건(이하 '관세법 위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원고 A는 그 무렵 피고에게 1,000만 원권 상당의 수표 2매를 교부하고, 2013. 1. 29. 5,4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선정자 D은 2013. 1. 30. 피고에게 7,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그럼에도 원고 A에게 375억 원 가량의 관세 및 가산세가 부과되고 검찰 조사가 계속되자 원고들은 법무법인 동인에 관세법 위반 사건 처리를 위임하는 한편 피고에게 위 각 지급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

가. 주위적 주장

피고는 관세법 위반 사건을 처리할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들에게 자신이 오랜 세관 근무를 통해 세관 직원 및 부장검사를 잘 알고 있어 관세법 위반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기망하여 원고들에게서 각 7,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그중 원고 A가 지급한 5,400만 원과 선정자 D이 지급한 7,400만 원은 피고가 관세법 위반 사건이 잘 해결되었다고 기망하여 성공보수조로 편취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각 7,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1) 피고는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원고들에게 부장검사를 만나 관세법 위반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하며 형사사건 처리를 수임하고 원고들에게서 각 7,4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1) 을 위반한 위임계약으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 피고가 원고들에게서 지급받은 각 7,400만 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가사 위 위임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과 함께 부산세관의 조사를 받은 이경임의 남편으로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던 점, 피고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조세심판에서 원고들 청구가 기각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보수는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과다 지급된 보수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5, 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자신이 세관 직원 및 부장검사를 잘 알고 있어 관세법 위반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기망하였다거나 관세법 위반 사건이 잘 해결되었다고 기망하여 성공보수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위와 같이 기망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2019. 11. 14.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항고하였으나 2020. 1. 10. 항고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갑 제5, 8, 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장검사를 만나 관세법 위반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말하였다거나 원고들에게서 관세법 위반 사건의 처리를 수임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관세사는 관세사법 제2조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는데, 을 제1~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의 관세 문제를 자문하고, 원고들을 대리하여 부산세관, 부산지방검찰청, 조세심판원 등에 의견서, 관련 판결례, 문헌 등을 제출하는 등 화주를 위한 의견진술을 대리한 사실, 원고들을 대리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달리 피고가 관세사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수임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더욱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에게 관세 문제를 자문하고, 의견진술, 조세심판 청구 등을 대리하였는데, 당시 원고 A에게 부과된 관세 액수를 비롯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지급한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봉지수

별지

1)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